NEXT경기

2018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체육교실
공모사업 운영계획(안)

Go Gyeonggi Sports

경기도체육회
GYEONGGI-DO SPORTS COUNCIL

2018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체육교실
공모사업 운영계획(안)

1 목적

○ 엘리트 체육의 근간인 학교체육(초·중·고) 선수들을 대상으로 선수 육성

○ 종목별 스포츠스타와의 체육캠프를 개최, 선수들과의 스포츠체험(강습)으로 경기도 엘리트스포츠의 경쟁력 강화 도모

○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활동을 확대하여 삶의 활력 및 건강 증진 도모

2 사업개요

○ **사업기간** : 2018년 6~12월중(7개월)

○ **대상선정** : 경기도종목단체(동·하계 전국체전 정식종목에 한함)

※ 사업신청은 종목단체별 1개 사업을 원칙으로 함

○ **지원대상** : 3~5개 종목(경기도내 초·중·고등학생 엘리트 선수(팀 또는 개인))

○ **인원구성** : 종목당 100여명 이내

○ **지원규모** : 3~5개 단체를 선정하여 각 단체당 10,000~20,000천원 내외

○ **사업내용**

- 종목별 사업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
- 스포츠스타를 활용한 각종 행사에 대한 지원

○ **선정기준** : 사업계획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

※ 사업계획(체계성, 참신성, 필요성, 홍보, 안전대책 등) 적격성 등을 검토

○ **제한사항** : 2016년도, 2017년도 동사업 시행 종목단체 제외

※ 제외 단체 : 검도, 복싱, 볼링, 육상, 축구(2016), 농구, 야구, 양궁, 우슈, 컬링(2017)

○ **주 최** : 경기도체육회

○ **주 관** : 경기도종목단체

○ **예 산** : 60,000천원(도비)

3 업무추진절차

①	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《3월》	⇒	■ 경기종목단체 문건 시달 등 • 전국체육대회(동·하계) 정식종목
②	사업신청서 접수 《4월》	⇒	■ 사업계획서 제출 **《양식 참조》** • 접수처 : 경기도체육회 경기훈련과
③	심사/선정결과 공지 《5월》	⇒	■ 경기도체육회 • 심사 : 경기도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 • 공지 : 문서시행
④	사업비 신청(보조금) 《사업 전》	⇒	■ 보조금신청서, 세부계획서, 통장사본 첨부 **《양식 참조》** ※사업비 신청 기일준수(사업 15일전)
⑤	지원금 검토/교부 《6월》	⇒	■ 경기도체육회 • 사업시행 7일 전까지 교부
⑥	사업운영 《6~12월》	⇒	■ 단체별 사업운영
⑦	결과보고서 제출 《사업 후》	⇒	■ **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《양식 참조》** ■ 성과평가 • 결과보고서 토대로 자체평가진행

※사업여부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

4 세부추진계획

가. 사업공고

❍ **공 고 일** : 2018년 3월중

❍ **공고방법** : 각 단체별 문서발송 등

나. 자격대상

❍ **자격대상** : 경기도 종목단체(전국체전(동·하계) 정식종목에 한함)

다. 사업신청서 제출

❍ **제출서류**

① 공모신청서 ② 사업계획서

❍ **제출방법**

- 제출기간 : 2017년 4월 20일(금) 16:00 까지
-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 접수
  - ☞ 주소 :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 (정자2동27-10)
  - ☞ FAX : 031-250-0499 / 이메일 : moo@ggsc.or.kr
- 제 출 처 : 경기도체육회(담당 : 한종무 주무 ☎031-250-0483)

라. 심사방법

❍ **1단계 : 요건심사**

- 공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완비 여부

❍ **2단계 : 심사위원회 심사**

-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심사위원 종합 토론으로 지원 여부 판단

❍ **3단계 : 결과공지**

- 공 개 일 : 2018년 5월중
- 공개방법 : 문서발송 등

※공개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

마.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기준

❍ 경기도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

❍ 심사기준

- 사업계획의 체계성, 참신성, 필요성 등 고려
- 참여인원 대비 예산의 적정성
- 안전대책 및 홍보계획 등

마. 보조금 사용

❍ 지원금 교부

- 공모심사 결과 선정된 단체에 한해 사업 시행 15일 전까지 보조금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접수
- 지원금 교부는 사업시행 7일전까지 교부 (단, 사업비 신청기간 준수)

※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예산내역 조정 및 통보

❍ 예산집행 기간

- 예산집행은 보조금 교부시점부터 사업종료 후 1주 이내에 사용 원칙

❍ 예산집행 기준

- 예산집행은 반드시 예산목적의 부합성, 계정과목의 적합성, 사업계획의 일치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
- 예산집행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 원칙이며, 법인(개인)카드사용과 현금집행은 금지
- 예산집행은 계정과목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

※ 부득이 예산집행과정에서 항목 간 예산변경이 필요 할 시에는 사전 본회 담당자와 협의 또는 예산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라며, 동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집행된 예산은 환수 조치할 수 있음

- 간이영수증 및 금전등록기·현금 매출 영수증은 정산 불가
- 사업기간에 맞게 지출 증빙 제출(사업기간 외 집행 불가)
- 물품 사진, 내역서 등의 사본 첨부하여 제출

❍ **계좌관리 및 카드발급**

- 타 예산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
- 개별 체크(신용)카드를 발급받아 사용(개인카드 사용불가)

※ 계좌 개설 후 체크(신용)카드 미발급 시 사업 승인 취소

❍ **보조금의 환수 또는 취소, 보류**

- 동 지침을 위반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 후 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- 보조금 부적절 집행 및 보조금집행과 관련한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
-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자료 제출 요구 시 불응 또는 불성실하게 자료가 제출된 경우
- 사업비로 편성된 보조금을 보조사업자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해서는 아니되며, 자체소유 또는 위탁운영 중인 건축물, 장비 등에 대한 사용료를 사업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없음
- 지원사업이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를 통한 사업추진방식이 아님에도 사업비의 전액 또는 대부분을 제3자에게 재교부(위임, 협약 등)하여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됨
- 기타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

❍ **잔액반납**

- 집행 잔액은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계좌로 즉시 반납 후 관련서류 제출 (본회로 사전 통보 후 반납조치)

❍ **결과보고 제출**

- 개소별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

차. 행정사항

❍ 사업변경

- 변동사항 발생 시 필히 본회의 승인 후 실시(변경사유 첨부하여 제출)

❍ 보조금 사용의 홍보

- 보조사업자는 모든 사업 홍보물(팜플렛, 현수막 등) 및 각종행사 용품 등에 대하여 경기도 지원 사업임을 반드시 표시

※ 본 사업은 경기도의 예산지원에 의한 사업입니다.

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　　경기도체육회 GYEONGGI-DO SPORTS COUNCIL

❍ 기타사항

- 참가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 시 제출